

추가약정서(하나 햇살론119 대출용)

본인은 귀행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 (이하 “대출약관”이라 한다)에 추가하여 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(이하 “서금원”)과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보증부대출)

본인이 귀행과 체결한 대출약관은 서금원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.

제2조(보증료의 계산)

본인이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율(연 0.5%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3조(보증료 납입)

본인은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일괄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4조(추가약관의 효력)

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은 대출약관, 본인과 서금원이 체결한 보증거래약관 및 귀행 또는 서금원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제5조(보증료 환급)

본인은 보증부대출의 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액 환급 보증료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이 완제되어 이 약정서에 따른 보증이 해지되는 날 이후 신용보증 약정서에 기입한 환급계좌로 환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제6조(기타)

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귀행 및 서금원 3자간 체결된 사실과 약관체결 시 귀행이 서금원을 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본인은 귀행과 『하나 햇살론119 대출』를 약정함에 있어,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(대출받는자) 성 명 : (인)
생 년 월 일 :
주 소 :

서민금융진흥원 및 하나은행 귀중

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